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5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아너스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85조에 따른 투자자의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아너스자산운용㈜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아너스자산운용㈜는 투자자인 A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'2x.xx.xx. ㈜펀드를 설정하고, 재산 전액(O억원)으로 B가 발행한 O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㈜펀드의 유일한 운용자산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5호